

의안번호	제 19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2월 28일

#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
----------	-----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28일

발의자 :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 1. 제안이유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옥외행사의 재난예방조치와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 9조)
- 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에 관한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축제”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축제를 말한다.
3.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연을 말한다.
4.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체육을 말한다.
5.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며, 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란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참여하는 옥외행사를 말한다.
10.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 등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옥외행사에 대해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신고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그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에 준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및 후원, 순간 최대 인원 등)

2.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구간 등에서 인파밀집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6.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7. 비상시 조치계획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경찰, 소방, 의료,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10. 안전점검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옥외행사 개최 1일 전 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와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 관련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과 옥외행사장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행사 시작 전까지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⑤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관련부서의 장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부서)과 함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최자·주관자와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9조(응급의료 지원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소방서 또는 도내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이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